

JTBC 고충처리인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JTBC'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고충처리인은 방송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춘 제작 또는 보도분야 전문 인력으로 선임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JTBC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JTBC 규정에 따른다.
2. JTBC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접수된 고충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JTBC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을 익년도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